

투자위험등급:
3 등급
[중간위험]

하나 UBS 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뉴오토시스템 증권투자신탁(제 1 호) [채권혼합]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뉴오토시스템 증권투자신탁(제 1 호) [채권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뉴오토시스템 증권투자신탁(제 1 호) [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 UBS 자산운용
 3. 판매회사 : 판매회사 영업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11년 1월 12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한 날 : **2011년 1월 18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제 1 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목적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 (1) 연평균 수익률
 - (2) 연도별 수익률

제 3 부. 매입 환매 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 환매 절차
 - (1) 기준가격 산정
 - (2) 매입 및 환매 절차
4. 전환절차 및 방법

제 4 부. 요약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이 투자설명서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여 정식 투자설명서의 표현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명 명칭)	펀드코드
하나 UBS 뉴오토시스템 증권투자신탁(제 1 호) [채권혼합]	74233
A	74570
C	74234
C-E	74571

2. 모집예정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 조좌

이 투자신탁은 1 조좌까지 모집(판매)가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단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채권혼합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하나 UBS 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 빌딩 (02-3771-7800)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집합투자기구의 주요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으로 운용하여야 함.		
1.주식	30%이하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2.채권	6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며 주식에 30%이내에서 주식(우량종목 최소 40 개 내외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시스템

매매(오토시스템)를 통하여 주가상승 이익 및 주가하락 시에는 변동성 매매 전략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1) 주식부문

■ 기본운용방침

- 자동주문 시스템을 이용한 주식 매매
 - 시스템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따라 매매전략 구사
- 주식시장 상승 및 하락을 이용한 매매 차익
 - 개별종목 주가가 하락시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상승시 주식을 매도
- 분산투자를 이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 업종별 40종목 내외의 종목을 엄선하여 포트폴리오 수익 극대화
- 조정 수익률 개념 도입
 - 펀드 누적수익률이 최초설정일로부터 일정수준 도달시마다 펀드의 주식편입비를 초기화하여 신규펀드처럼 운용

■ 주식 편입비 전략

- 펀드 유형별로 최초 주식편입비를 달리하여 운용
- 최초 설정 이후 주식 매매는 주식시장 등락에 따라 주식 편입비 변동

구분	최대 주식편입비	최초 주식편입비	조정 수익률
하나UBS 뉴오트시스템 증권 투자신탁(제1호) [채권혼합]	30%	20%	매 6% 마다

주식편입비 재조정 조건

- ▶ 설정 후 매 1년 경과시 마다 : 초기 주식편입비로 조정
- ▶ 조정수익률 달성시 마다 : 초기 주식편입비로 조정
- ▶ 설정 후 주식편입비 상승시 : 주식편입비 조정 안함

■ 주식 포트폴리오 전략

- 업종별 우량 종목 중에서 당사 모델포트폴리오를 참고하여 최종 포트폴리오 40종목 내외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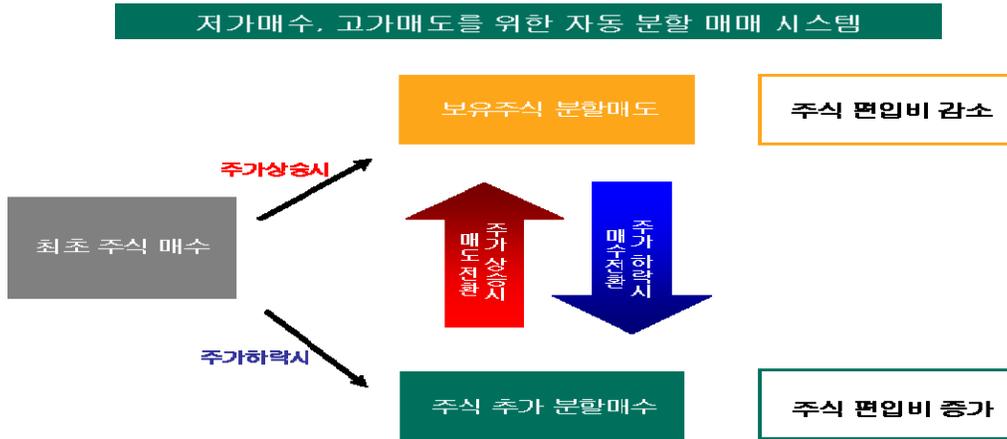
2) 채권부문

■ 기본운용방침

- 국고채, 통안채를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우량등급의 은행채에 투자

- 금리 상승기에는 CD등 단기물 위주로 운용하여 금리상승 리스크 최소화

3) 오토시스템 매매구조



(2) 참고지수 : **(통안채 1년*80%)+(KOSPI*2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신탁자산의 30% 이하를 투자하고, 잔여 신탁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하는 혼합채권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러나, 이 펀드는 시장의 등락에 따라 주식 편입비가 시스템적으로 조정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주식시장의 변동을 추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교지수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이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를 참고하기 위하여 **(통안채1년*80%) +(KOSPI*20%)** 를 참고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참고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2) 참고지수가 2009년 1월 1일자로 변경되었으며, 변경전 참고지수는 (KOSPI 수익률*27.0%)+(CD*73.0%) 이었습니다.

(3) 위험관리

- 투자대상종목의 선별투자(거래량 과소 종목 제외)를 통한 펀드 유동성 위험 최소화
- 주문 실행 전 사전 컴플라이언스 체크를 통한 관련 법률 및 규약 준수
- 주문 체결내역 실시간 확인 등을 통한 주문 체결 리스크 최소화
- Risk Control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관리

3. 수익구조

- 주가 상승기에는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으며, 주가 하락 시에도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과 변동성 매매전략에 의한 주식 매매차익 발생으로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주식시장이 하락하여 주식 매매·평가손실이 변동성 매매이익과 채권·유동자산의 이자 수익보다 클 경우 펀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 등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투자적격등급(BBB+) 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행사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요건을 충족하되,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0%이상 -30% 미만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 분산요건을 충족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자산에 최대 50% 미만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상 -10% 미만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투자적격등급(BBB- 이상) 채권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차익거래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 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 UBS 자산운용주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운용전문인력(2011.1.12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진형보	1962	이사	18 개	7,807 억	- 연세대 경영학 석사 - 파생상품 등 19년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1 개	6,146 억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추이 (세전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1) 참고지수 : (통안채 1년*80%)+(KOSPI*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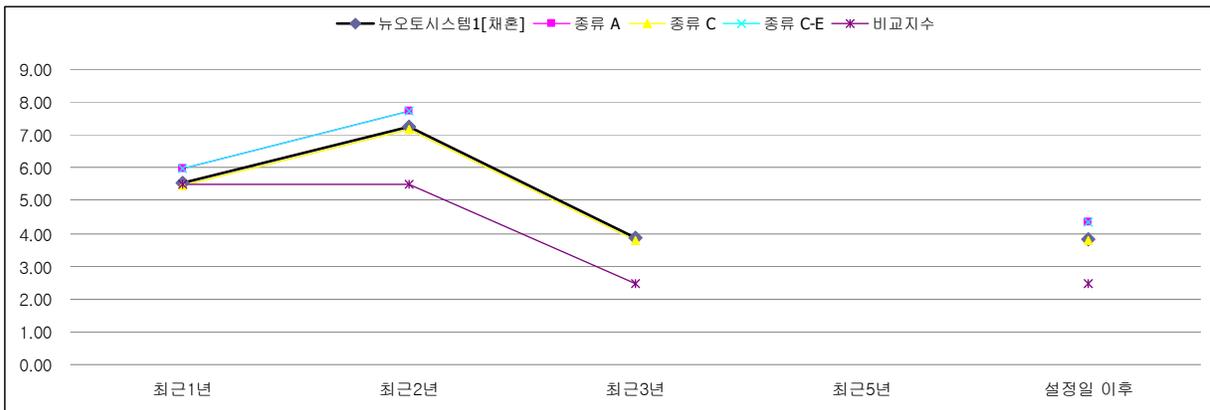
주 2) 참고지수가 2009년 1월 1일자로 변경되었으며, 변경전 참고지수는 (KOSPI 수익률*27.0%) + (CD *73.0%)이었습니다. 참고지수의 성과는 변경 전 참고지수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주 3) 참고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기준일: 2010년 9월 30일, 단위 : %)

연도	최근1년 2009.10.01 ~ 2010.09.30	최근2년 2008.10.01 ~ 2010.09.30	최근3년 2007.10.01 ~ 2010.09.30	최근5년	설정일 이후 2007.10.01 ~ 2010.09.30
뉴오토시스템1[채혼]	5.52	7.25	3.85		3.84
종류 A	5.97	7.71			4.33
종류 C	5.46	7.19	3.79		3.79
종류 C-E	5.97	7.71			4.34
비교지수	5.49	5.49	2.48		2.48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기준일: 2010년 9월 30일, 단위 : %)

연도	최근1년차 2009.10.01 ~ 2010.09.30	최근2년차 2008.10.01 ~ 2009.09.30	최근3년차 2007.10.01 ~ 2008.09.30	최근4년차	최근5년차
뉴오토시스템1[채혼]	5.52	9.01	-2.64		
종류 A	5.97	9.48	-2.20		
종류 C	5.46	8.94	-2.68		
종류 C-E	5.97	9.47	-2.16		
비교지수	5.49	5.49	-3.28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	종류 C-E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5%	없음	없음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90 일미만: 이익금의 70%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2010.5.3 ~ 2011.5.2

구 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	종류 C-E	

집합투자업자보수	0.4500%	0.4500%	0.4500%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5500%	1.0125%	0.5500%	
신탁업자보수	0.0300%	0.0300%	0.030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0%	0.0180%	0.0180%	
기타비용	0.0136%	0.0134%	0.0138%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1.0616%	1.5239%	1.0618%	
증권 거래비용	0.1770%	0.1753%	0.1714%	사유발생시

(2) 2011.5.3 ~ 2012.5.2

구 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	종류 C-E	
집합투자업자보수	0.4500%	0.4500%	0.4500%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5500%	0.9750%	0.5500%	
신탁업자보수	0.0300%	0.0300%	0.030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0%	0.0180%	0.0180%	
기타비용	0.0136%	0.0134%	0.0138%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1.0616%	1.4864%	1.0618%	
증권 거래비용	0.1770%	0.1753%	0.1714%	사유발생시

(3) 2012.5.3 ~ 2013.5.2

구 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	종류 C-E	
집합투자업자보수	0.4500%	0.4500%	0.4500%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5500%	0.9375%	0.5500%	
신탁업자보수	0.0300%	0.0300%	0.030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0%	0.0180%	0.0180%	
기타비용	0.0136%	0.0134%	0.0138%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1.0616%	1.4489%	1.0618%	
증권 거래비용	0.1770%	0.1753%	0.1714%	사유발생시

(4) 2013.5.3 이후

구 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	종류 C-E	
집합투자업자보수	0.4500%	0.4500%	0.4500%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5500%	0.9000%	0.5500%	
신탁업자보수	0.0300%	0.0300%	0.030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0%	0.0180%	0.0180%	
기타비용	0.0136%	0.0134%	0.0138%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1.0616%	1.4114%	1.0618%	
증권 거래비용	0.1770%	0.1753%	0.1714%	사유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 대한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회계년도 2010.09.30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회계년도 2010.09.30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구 분 (원)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	158,009	391,034	647,943	1,411,405
종류 C	156,179	492,354	862,988	1,964,403
종류 C-E	108,816	343,043	601,278	1,368,679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최고한도세율 : 소득세 35%, 주민세 3.5%).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최고한도세율 : 법인세 25%, 주민세 2.5%)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수수료 등 종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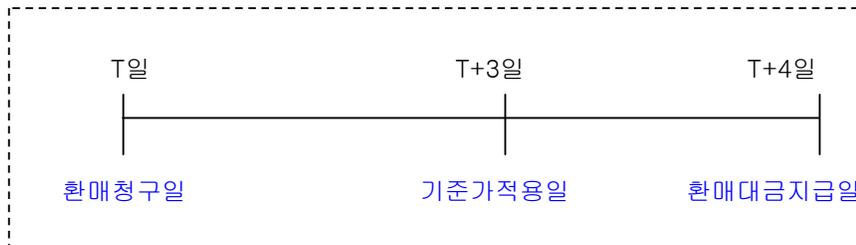
-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오후 5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4.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IV.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원)

요약재무정보	제 3 기	제 2 기	제 1 기
	20100930	20090930	20080930
I. 운용자산	25,817,211,765	18,810,968,708	30,194,995,095
증권	17,230,227,795	11,691,523,112	19,239,121,534
현금 및 예치금	132,983,970	5,445,596	882,873,561
기타운용자산	8,454,000,000	7,114,000,000	10,073,000,000
II. 기타자산	1,934,460,212	102,010,054	163,354,618
자산총계	27,751,671,977	18,912,978,762	30,358,349,713
II. 기타부채	3,701,834,260	170,054,499	274,672,309
부채총계	3,701,834,260	170,054,499	274,672,309
I. 원본	22,793,507,042	17,655,012,049	30,895,577,098
II. 수익조정금	95,990,596	388,393,680	43,660,671
III. 이익잉여금	1,160,340,079	699,518,534	-855,560,365
자본총계	24,049,837,717	18,742,924,263	30,083,677,404

Ⅰ. 운용수익	1,485,604,441	1,854,811,085	-461,398,325
이자수익	588,510,628	699,456,306	1,028,835,619
배당수익	53,908,821	98,454,400	65,666,460
매매/평가차익(손)	841,514,689	1,055,354,365	-1,557,813,125
기타이익	1,670,303	1,546,014	1,912,721
Ⅱ. 운용비용	325,264,362	343,392,857	394,162,040
관련회사보수	320,413,864	338,868,753	387,367,244
기타비용	4,850,498	4,524,104	6,794,796
Ⅲ. 당기 순이익	1,160,340,079	1,511,418,228	-855,560,365
* 매매회전율	289	297	157
* 매매수수료	38,079,534	43,392,819	53,651,224